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범죄정보기획관,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2담당관,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, 반부패부 반부패2과, 반부패부 반부패3과, 마약·조직범죄부, 마약·조직범죄부 마약·조직범죄기획관, 마약·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및 공공수사부 공공수사기획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,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·증권범죄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법무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6년 3월 31일”을 각각 “2028년 3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다목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6년 3월 31일”을 각각 “2028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7